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농작물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조사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업무 추진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신설(안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 나. 피해 신고 및 조사 방법 변경(안 제7조)
- 다. 피해보상절차 일부 변경(안 제8조제3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장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해예방시설”이란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업인등”이라 한다)”를 ““농작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감액율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0퍼센트
 2. 그물망, 경음기 등의 경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20퍼센트
 3.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포획틀 등 하자 없는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감액 없음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시장”을 “읍·면·동장은”으로, “실시한다”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시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7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복지환경란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 다음에 6. 농작물 피해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작물 피해 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	읍면동장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u>“피해예방시설”이란 각종 울 타리,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u>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 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이 구미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 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 하 <u>“농업인등”이라 한다</u>)이 야 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 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 ----- ----- ----- ----- -- <u>“농작물등”이라 한다</u> ----- ----- -----.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해당연도 이전에 피 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 해보상 산정액을 감액하여 지급</u>

<신 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생략)

② 읍·면·동장은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한 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액율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0퍼센트

2. 그물망, 경음기 등의 경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20퍼센트

3.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포획틀 등 하자 없는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감액 없음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읍·면·동장은-----

-----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

우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u>7일</u>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 -----.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20일</u> ----- -----. <u>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생략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 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환경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김 동 진
	팀 장	최 명 식
	담 당 자	임 윤 혜 (480-5265)